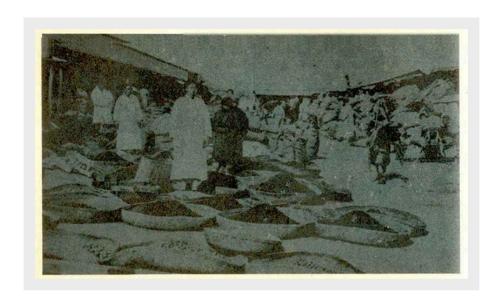
1833년 한성 쌀폭동

1833년(순조 33) ~ 미상



1 19세기 정부의 서울 미곡 유통 정책

조선 정부는 서울에 원활하게 물자가 공급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는 특히 빈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조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비축 곡물에 여유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서울의 미곡 수급을 조절하였다. 조선 정부는 흉년 등의 이유로 서울의 쌀 공급이 여유가 없으면 정부의 비축미를 풀어 서울의 미곡 수급을 맞추는 적극적인 정책을 병행하였다. 미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 연간에 정부의 미곡 수급 능력은 한계를 보였고, 서울 미곡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력은 떨어졌다. 이 시기 서울의 미곡 유통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상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미곡 수급이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원활한 곡물 수급을 상인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흉년이라는 이유로 쌀값을 강제로 낮게 책정하여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아무리 엄한 법으로 금지하더라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흉년이라는 이유로 쌀을 헐값에 팔도록 강제하면 절대 듣지 않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쌓아 둔 곡식을 더 깊이 숨겨 오히려 곡물 수급이 더욱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미곡 상인들의 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도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은 1809년(순조 9) 흉년 이 들어 서울의 미곡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에 반입된 곡물을 외방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호조판서 이만수(李晚秀)는 백성의 실정에 따라야지 법으로 금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였다. 곡물이 지방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하는 것보다는 곡물 상인들이 스스로 곡식을 반입하도록 유도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였다. 이때 이만수의 견해에 동조하고 나선 이들이 심상규, 김희순 등 당대 세도가인 김조순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이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관련사료

이와 비슷한 주장은 목면 독점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다. 1817년(순조 17) 사헌부에서 목면을 독점하는 폐단을 금지하자는 상소를 올리자, 국왕은 비변사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오히려 독점을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폐단을 낳을 것이라면서 반대하였다.

"면화 농사가 여러 해 동안 흉년인데, 다행히 황해도와 평안도의 작황은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부상들이 독점하여 이익을 농단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 거래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놔두어야 합니다. 법을 세워 금하면 오히려 백성을 동요시켜 원근의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지 않을 것이니, 이는 실로 난처한일입니다." 관련사료

다시 말해 독점 상업의 성행으로 인한 폐단보다 상업의 위축을 막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58년(철종 9) 영의정 김좌근이 물가는 억지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래 포도청에서 곡식을 무역하는 경강상인을 마치 도적처럼 대우한다. 무릇 시기를 틈타 이익을 꾀하고 물가가 오를 때를 이용해 물화를 농단하는 것이 상술(商術)이다. 이는 포도청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사료

이처럼 세도정권 들어 정부는 상인들의 독점 행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전 시기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독점을 할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상인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피해자는 중소상인과 도시빈민이었다. 독점상업의 옹호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는 도시의 일용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견디다 못한 서울 빈민들의 불만은 1833년(순조 33) 쌀폭동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2 쌀폭동 전야, 쌀가게 문을 닫아라

쌀폭동은 1833년 3월 서울의 미곡 유통이 경색되면서 일어났다. 1832년(순조 32)은 전국적인 흉년이었고, 특히 서울의 미곡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경기지역의 흉년이 심했다. 게다가 나라 재정에 여유가 없어 제대로 미곡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서울의 민심은 1809년(순조 9)과 1814년(순조 14)의 흉년 때보다 훨씬 동요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미곡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서울의 빈민을 주대상으로 적극적인 미곡 공급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우려와 달리 한강 연변에 많은 양의 곡물이 반입되어 1833년 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쌀값이 조금 인하되기까지 하였다. 관련사료

그렇게 되자 경강 연변의 미곡상인, 즉 경강상인들은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농간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서울의 미곡 상인들에게 곡식을 팔지 못하게 하였다. 서울의 싸전 상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값을 올렸다. 그 결과 2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한 섬의 곡식도 도성 안으로 반입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10여 명의 미곡 상인 중 한 사람만 가게를 열고 다른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게 하였다.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자 쌀값이 급등하였다. 3월 6일, 7일에는 이전에 비해 쌀값이 2배로 올랐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3월 8일에는 서울의 싸전이 일제히 거래를 중지하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매일 곡식을 사서 연명하는 이들이 곡식을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관련사로 상인들이 무역해 놓은 쌀이 한강 연변에 쌓여 있는데도, 미곡의 가격은 연초보다 올랐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쌀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3 성난 시민, 싸전을 불태우다

1833년 3월 8일 싸전이 일제히 문을 닫아 미곡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서울의 미곡 구매자들은 흥분하였고, 싸전 상인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쌀폭동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그들이 '쌀값이 급등한 데는 시전 상인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하여, 싸전을 부수고 불을 지르면서였다.

시작은 우발적이었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폭동의 주모자로 지목받은 호위 군관(扈衛軍官) 김광헌은 싸전 상인이 가게 문을 닫고 거래를 중지하자 바로 무리를 불러 싸전을 부수고 문권을 불사르고 가게를 허물어 버렸다. 스스로를 재직(齋直)이라고 하여 신분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김광헌 등이 불태운 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싸전의 거래장부와 외상장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싸전 상인들에게 외상장부가 불태워졌다는 것은 싸전이 불태워지는 것 못지 않게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 싸전의 담합 행위에 흥분한 와중에서도 김 광헌은 문권을 불태우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다른 주모자로 지목받았던 고억철은 무리를 선동하여 성 안팎의 싸전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경강 연변에 미곡을 쌓아놓은 15채의 집들도 불태웠다. 이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은 주동자가 경강 연변의 경강상인이었음을 정확히 알고 한 행동이었다.

홍진길은 요령을 흔들면서 군중들을 지휘하였다. 흥분한 군중들이 질서를 잃기 전에 요령을 들고 공격 대상을 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혼란의 와중에서도 싸전과 경강 연변의 미곡상인이 주로 피해를 입었고 여염집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관련사료

분노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자 군영의 장교와 병사를 보내 진압하게 하였으나 그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의 교졸까지 풀어서 잡히는 대로 군문에 보내 효수토록 하는 강경책을 폈고 가까스로 소요를 진압할 수 있었다.

4 쌀폭동의 처리 과정 – 미봉책과 꼬리자르기

쌀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접한 조선 정부는 전례 없는 일에 크게 당황하였고 매우 신속하게 사태를 처리하였다. 조선 정부는 가장 먼저 쌀폭동 초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좌우 포도대장을 파직하였다. 그리고 김광헌, 고억철 등 7명을 주범으로 판단하고 효수형에 처하였다. 나머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처벌하였다. 관련사료

사건 주동자를 조사하는 한편으로 쌀폭동의 원인 제공자, 즉 경강상인과 싸전상인에 대한 처벌 문제도 논의하였다. 우선 강상과 시전상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막여객주인 (東幕旅客主人) 김재순과 하미전인(下米廛人) 정종근과 이동현, 잡곡전인(雜穀廛人) 최봉려 등 4 인을 체포하였다. 그중에서 쌀폭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목된 것은 김재순과 정종근이었다. 김재순은 곡식을 감추고 화수(和水)조선시대 조세로 바치는 곡물에 일부러 물을 타서 곡물의 수량을 늘려 그 만큼의 차액을 빼돌리던 행위를 했다는 죄목이었고, 정종근은 쌀 거래를 중지했다는 죄목이었다. 반면 이동현은 도량형 부정, 최봉려는 화수 혐의였다. 이들 중 김재순과 정종근은 사형에, 이동현과 최봉려는 엄형 후 유배 보냈다. 형량이 결정된 당일인 4월 12일 군민(軍民)을 모아놓고 노량진 백사장에서 김재순 등을 효수하였다. 관련사료

이처럼 상인 2명만을 쌀폭동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하여 사형에 처한 것은 쌀폭동의 진상과는 큰 거리가 있었다. 쌀폭동 당시 한강 연변에서 불태워진 집이 15호나 되었는데도 경강상인으로는 김재순 1인만이 지목되어 효수당했다. 그리고 적발된 자 중 김재순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전부 시전 상인이었고, 그것도 둘은 미곡 독점보다는 거래상의 부정에 불과한 도량형 부정과 화수 죄로 처벌받았다. 이를 보면 경강상인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경강상인 등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는 와중에서도 경강상인을 위로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쌀폭동 이후 사헌부 감찰이 곡물상인들의 간사한 폐단을 규찰하기 위해 별도로 절목을 제정하고 강주인(江主人)한강 일대의 경강(京江) 주변에 살면서 선인(船人)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선인의 상품을 지켜 주며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던 중간상인에게 곡식을 쌓아두고 매매하지 않는 자들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자, 오히려 해당 감찰을 처벌하였다.

독점상업에 대한 도시 빈민의 항쟁은 실패로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사태를 진압한 조선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변화,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이윤을 노리고 유통 질

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쌀폭동 처리 방식은 당시 서울의 미곡 유통 구조, 상인과 정치세력의 결탁, 이로 인한 정부 상업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당시 서울의 미곡은 그 대부분을 경강의 여객주인이 반입하는 것에 의존하였다. 쌀폭동 처리 과정에서 그들을 자극하여 서울의 미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미온적이었다. 정부는 쌀 독점으로 인한 쌀값 폭등으로 민간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쌀 독점 상업에 대한 단속으로 서울의 쌀 공급이 경색되는 것을 더 우려하였다. 때문에 미곡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미곡 유통을 독려하여 서울에 안정적으로 미곡이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취한 데에는 18세기 말 이후 궁방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여객 주인권을 다수 매입하여, 여객 주인업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